-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지자체용)」*에 따른 -

여성복지관 강사·수강생 코로나19 확진 대응방안

* (제12판, '22. 3.14.) 중앙방역대책본부·중앙사고수습본부

□ 확진환자

○ **정의** :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

○ **대응방안** : **강의·수강 제한 기본 7일** (자가검사 양성시 추가 3일, 최대 10일)

- **(강의·수강 제한) 검사일(검체채취일) 포함 7일차까지 제한(8일째 가능)**

※ 예) 2. 1. 검사일 → 2. 8. 강의·수강 가능 * 검사일(검체채취일)포함 7일차 해제

- **(강의·수강 참여)** 확진자는 강의 참석일에 자가검사 등 실시 결과 음성일 경우 가능. **양성일 경우 강의와 수강을 3일간 추가 제한**

※ 양성일 경우 3일간 강의와 수강 추가 제한에 따른 사전 연락 필요

- (강 사) 강좌 담당 주무관에게 연락
- (수강생) 강사에게 연락

□ 접 촉 자(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)

○ **범 위**

- 확진환자의 동거인〔한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(가족, 친지, 친구 등)〕
- 여성복지관에서 확진환자와 같은 수업에 참여한 강사와 수강생

○ **대응방안**

- **(확진환자의 동거인) 확진환자 검사일 기준 3일간 강의·수강 제한.** 강의 참석일에 자가검사 등 실시 후 음성일 경우 강의·수강 가능 **(검사키트 등 지참)**

※ 여성복지관 강사와 수강생은 동거인이 확진환자로 진단될 경우 **강사는 여성복지관 강좌 담당 주무관**에게 **수강생은 담당 강사**에게 **즉시 연락**

- **(확진환자와 같은 수업에 참여한 강사, 수강생) 강의·수강 제한 없음.** 단, 확진환자가 발생한 다음 강의에 참석 시 **음성 확인을 위한 자가검사키트 등 지참**

□ 수강생 출결 처리

○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접촉자가 수강 제한으로 강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한 것으로 처리

○ 이외 코로나19 의심 증상 등으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 인정 가능 **(※ 강사 또는 교육팀에 사전 연락 필수)**